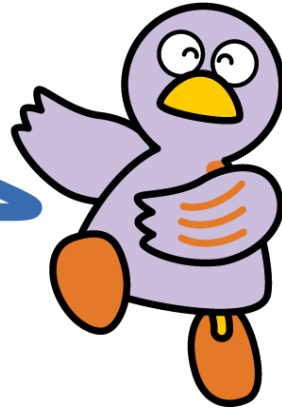


제 1 장

재류관리제도
주민기본대장제도
마이넘버제도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 1 재류관리제도
- 2 주민기본대장제도
- 3 마이넘버제도
- 4 기타 제도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사전에 본국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을 받아 일본대사관 등에서 사증(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재류기간」은 상륙 시에 결정됩니다. 일본 체재 중에 실시하는 재류에 관한 수속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서 등에서 합니다. 사이타마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사이타마출장소에서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 수속에 대해(출입국재류관리청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일본어)
<http://www.immi-moj.go.jp/english/index.html>(영어)
<http://www.immi-moj.go.jp/chinese/index.html>(중국어·번체자)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한국·조선어)
<http://www.immi-moj.go.jp/spanish/index.html>(스페인어)
<http://www.immi-moj.go.jp/portuguese/index.html>(포르투갈어)
https://www.moj.go.jp/isa/other_languages.html (기타의 언어)

※ 각 홈페이지의 URL 은 임의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교통	접수시간	대응언어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0570-013904(IP, PHS, 해외전화 :03-5796-7112)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JR시나가와역 고난출구에서 도영버스 시나가와부두순환 승차후 도쿄출입국재류관리청앞 하차	8:30~17:15 월~금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0570-03-4259 (IP, PHS, 해외전화 : 03-5796-7234)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JR시나가와역 고난출구에서 도영버스 시나가와부두순환 승차후 도쿄출입국재류관리청앞 하차	9:00~16:00 월~금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일본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사이타마출장소	048-851-967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츄오구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2법무종합청사 1층 사이쿄센 요노혼마치 역에서 도보 10분	9:00~16:00 월~금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일본어
외국인 종합상담센터 사이타마 ※공공기관(시청 등)의 창구에서 일본어를 몰라 곤란할 때에는 창구의 직원에게 상담센터로의 전화연결을 의뢰해 주십시오.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중계 통역을 해드립니다.	048-833-3296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기타우라와 5-6-5 게이힌도호쿠센 기타우라와역서쪽출구에서 도보 10분 사이타마현 우라와 합동청사 3층	9:00~16:00 월~금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입국관리제도, 노동, 법률, 복지전문상담은 예약 필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조선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	03-3202-5535 또는 03-5155-4039(FAX 겸용)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2-44-1 도쿄도 건강센터 프라자 하이지야 11층 신주쿠 다문화공생플라자 내	9:00~16:00 월~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연휴 및 제2·4수요일은 제외)	상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월, 화, 수) 스페인어(월, 화, 수) 인도네시아어(화) 베트남어(월, 목) 타갈로그(금)

1 재류관리제도

(1) 재류자격·재류기간

일본에 입국할 때에 허가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은 여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를 제외하고, 허가 받은 재류자격에서 인정되고 있는 활동 이외의 취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재류자격에서 인정된 활동 이외의 취로활동을 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로한 경우에는 처벌 또는 국외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여된 재류자격에 한정되어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서 일본에 재류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을 넘어서 재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류카드

재류자격은 「중장기재류자」에 대해 그 상륙허가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재류기간 갱신 허가 등의 재류에 관련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중장기재류자」란 입관법 상의 재류자격을 받고 일본에 중기간 및 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①~⑥ 중 어느 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재류자격이 「3개월」 이하로 결정된 사람
- ②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결정된 사람
- ③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으로 결정된 사람
- ④ 「특정활동」 재류자격이 결정된, 대만일본관계협회 일본사무소(타이베이 주일 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상주총대표부 직원 또는 그 가족 분
- ⑤ 특별영주자(주)
- ⑥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주)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입출국항에서의 수속

신치토세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츄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여권에 직접 상륙 허가 인증을 함과 동시에 상륙 허가로 인해 중장기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를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재류자인 사람이 관할 행정 관청 창구에서 거주지 신고를 실시한 후에 재류카드가 우편을 통해 교부됩니다.

- 시, 구, 정, 촌(관할 행정관청)에서의 수속

처음 일본에 입국하거나 이사해 온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 창구에서 다음과 같이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민기본대장제도로 인한 전입 신고, 전출 신고와 일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음 일본에 입국한 사람

입출국 항구에서 재류카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 창구에서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사 온 사람

중장기재류자인 사람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주소지에 이전해 온 이후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이사온 관할 행정관청 창구에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의 수속

거주지 이외의 (변경) 신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신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사진,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신고·신청일 당일에 새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 신고

결혼으로 성씨 또는 국적·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②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영주자 내지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인 경우에는 당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③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재류카드의 분실, 도난, 감실, 카드가 현저하게 훼손 내지 오염 등이 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소속기관·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우편 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새 재류카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 ① 소속기관에 관련된 신고

중장기재류자 중 해당 재류자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의 취로 자격(「예

술」, 「종교」, 「보도」는 제외)또는 「유학」 등과 같은 학습관련 자격인 사람이 그 소속기관(회사, 학교 등)의 명칭 · 소재지의 변경, 소멸, 이탈(계약 종료), 이적(새로운 계약 체결)이 발생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중장기재류자 중 그 재류자격이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 과 같은 사람이 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류 심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용됩니다. 하기 ①③④⑦의 신청은 허가가 인정된 경우에 중장기재류자 분에게 새 재류카드가 교부되고, 여권에는 별도로 인증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중장기 재류자 이외의 분에게는 여권에 인증도장을 찍습니다).

① 재류자격 변경

새로 현재 재류목적과 달리 별도로 목적이 발생하여 해당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 유학생이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로하고자 할 경우 등)

② 자격외 활동 허가

현재 소유하는 재류자격의 변경 없이 그 재류자격에서 인정된 활동 외의 수익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 또는 보수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사전 허가가 있어야 함)

③ 재류자격 취득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 또는 일본인이었으나 일본에서 외국인이 된 사람이 60 일을 초과해서 재류할 경우(출생일 또는 외국인이 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④ 재류 기간 갱신

현재 부여된 재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신청 접수는 재류 기간 만료일의 3 개월 전부터 가능)

⑤ 취로 자격 증명서

일본에서의 취로가 인정된 재류자격을 소유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것(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함으로써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취로 가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⑥ 재입국 허가

재류가 인정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입국 허가” 를 받아야 함.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면 일본에 다시 돌아왔을 때 통상시에 필요한 사증이 면제됨과 함께 이전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재입국 허가 유효기한은 최장 5년.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있으면 출국 후 1년 이내(재류 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특별영주자인 경우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⑦ 영주 허가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할 경우

2 주민기본대장제도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세대별로 편성한 것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계되는 수속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주민표

다음 표에서 기재된 4개 구분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분은 주소를 두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이 주민표를 작성합니다(관광 등의 단기 체재자 등은 제외).

주민표의 사본은 행정관청 창구에서 교부를 받으며,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대체하는 증명서로서 다양한 수속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본인과 같은 내용인 기재사항

이름·세대주의 이름 및 관계, 출생의 연월일, 남녀의 성별, 주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외국인주민만의 기재사항

국적·지역, 외국인주민이 된 연월일, 다음 표에서 각 구분에 상응한 기재사항
 ※ 외국인등록법에 있어서 그 등록 사항이었던 국적지에 속한 국가에서의 주소 또는 거처, 출생지, 직업, 여권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상구분	대상자의 내용	기재사항
중장기재류자 (재류카드 교부대상자)	3개월 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외국인이나, 단기체제·외교·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이외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 기간의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중장기재류자인 것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 증명서교부 대상자)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 영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번호 특별 영주자인 것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제허가자	입관법의 규정으로 일시비호를 위해 상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인정 신청을 실시해, 임시로 일본에 체재할 것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비호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륙기간, 또는 가체제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체제 기간

	허가받은 외국인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제허가자인 것
출생에 의한 경과 체제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제자	외국인이 된 사유가 출생이나 일본국적의 상실로 인한 분(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0 일까지의 사이는 체류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경과 체제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체제자인 것

(2)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수속

① 입국할 때

일본에 입국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②이사를 할 경우

이사를 하기 전에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사를 간 지역 관할 행정관청에 전출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③출국할 때

출국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출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3) 주민기본대장카드

2016 년 1 월부터 새로운 마이넘버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기본대장카드 발행은 2015 년 12 월로 종료되었습니다.

단, 기존의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민기본대장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할 때는 주민기본대장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는 [3 마이넘버제도]를 참고하십시오.

3 마이넘버제도

2015 년 10 월 5 일에, 사회보장·조세번호(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넘버는 한사람당 한개씩 주어지는 고유의 12 자리의 번호입니다. 사회보장이나 세금 수속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근무처 등에서 필요합니다.

마이넘버는 일본인주민과 동일하게 주민표에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부여됩니다.

(1) 마이넘버제도의 수속

①마이넘버의 통지

2020년 5월 25일 이후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 작성된 주민표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개인번호통지서」라는 마이넘버를 기재한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살고 있는 장소와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면 개인번호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표가 있는 관할 행정사무소의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개인번호통지서는 당신의 마이넘버를 알려주기 위해 송부됩니다.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카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개인번호통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②마이넘버의 이용원천징수표를 작성하는 등의 세금수속이나 사회보장수속에 필요하므로 마이넘버를 근무처에 제시합니다. 또한 복지의 급부 수속에도 필요하므로 마이넘버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시합니다.

그 외에, 법정조서작성등 세금 수속에 필요하므로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마이넘버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마이넘버 취급상의 주의점

사회보장이나 세금에 관한 수속등 법률이 정한 것을 이외에, 타인의 마이넘버를 이용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마이넘버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마이넘버를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하는 것은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①마이넘버 카드의 이용용도

마이넘버가 교부된 외국인주민은 마이넘버카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주민표에 기재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외에 얼굴사진과 마이넘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적인 신분증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넘버 카드는 보안이 뛰어난 IC 카드로 세금의 확정신고 등의 행정수속을 인터넷으로 할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 칩에 기재된 사항은 마이넘버카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 외에, 인터넷 상의 수속에 사용되는 전자증명서로 한정되어 있어 소득 등의 프라이버시성이 높은 개인정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②마이넘버 카드 교부신청방법

마이넘버 카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마이넘버를 알리는 「개인번호통지서」의 우편물에 동봉된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창구, 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접수시간	안내언어
마이넘버 종합프리다이얼(마이넘버제도, 마이나 포털에 관한 것)	0120-0178-26	평일 9:30-20:00 토, 일, 공휴일 9:30-17:30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마이넘버 종합프리다이얼 (마이넘버카드, 전자증명서, 개인번호통지서, 통지카드, 분실과 도난에 의한 마이넘버카드의 일시이용정지에 관한 것)	0120-0178-27	평일 9:30-20:00 토, 일, 공휴일 9:30-17:30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마이넘버를 활용한 소비활성화책에 관한 것	0570-0100-76 (유료)	평일 9:30-20:00 토, 일, 공휴일 9:30-17:30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마이넘버제도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이트

(내각관방 사회보장개혁담당실, 내각부 대신관방번호제도 담당실)

<https://www.cao.go.jp/bangouseido/foreigners/index.html>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라비아어, 벵갈어, 비루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티벳어, 터키어, 우루두어, 우즈벱어, 베트남어, 네팔어) 통지카드, 마이넘버 카드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이트(지방공공단체정보 시스템기구)

<https://www.kojinbango-card.go.jp/index.html>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화면 우측상단에서 언어를 선택

4 기타제도

(1) 외국인에 의한 일본국적의 취득

① 귀화

외국인은 법무대신에게 귀화신청을 하고, 법무대신이 허가한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 취득

출생 후에 일본인에게 인지된 20 세 미만의 외국인이나 일본국적을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잃은 일본에 주소를 가진 20 세 미만의 외국인은 법무대신에게 국적취득신고를 신고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의 선택

외국국적과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2중 국적자)은 22세가 될 때까지(20세가 되고 난 후에 2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중 국적자가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담창구 · 문의처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 및 국적취득은 주소지에 따라 각 지국에서 취급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4일부터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호적과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여 주십시오.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호적과

전화번호 048-851-1000 (대표) 네비다이얼번호 「5」

주 소 사이타마시 슈오구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 2 법무총합청사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8:30~17:15

국적 수속에 대하여 설명한 웹사이트(법무국 홈페이지, 일본어)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goannai_index_kosekikokuseki.html

(3) 호적 제도

일본에는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 관계를 등록하여 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인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일본인과 결혼했을 때 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기록, 보관되어 그 사람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유형	수속 장소	
출생 신고	각 행정관청 호적계	신고 기한 또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망 신고		
혼인 신고		
이혼 신고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출신 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도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출신 국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서명(싸인)대신 인감(도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등록된 인감을 「실인(實印)」이라고 합니다. 그 인감이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등록증명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권리에 관계되는 계약을 할 때에 이 실인과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① 인감등록의 신청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제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8mm 이상 25mm 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크기로 규정한 자치단체가 많지만, 크기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자의 이름은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표에 통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는, 성명 및 통칭)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의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재류카드 등과 등록할 인감(실인)입니다. 성명 또는 통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거나 재질이 고무 등 변질되기 쉬운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새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② 인감등록증

인감등록의 신청을 하면 인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신청할 때 이 인감등록증이 필요합니다.